

의료관광 유치기관에 대한 행정제재 기준

법무부 출입국·외국인정책본부 체류관리과

1 유치기관의 준수사항

- 유치기관의 휴·폐업, 대표자·전담 직원 변경 시, 15일 이내에 비자포털(www.visa.go.kr)에서 기관 회원정보(사업자/담당자 변경) 반드시 변경 등록
 - ※ 단, 대표자 · 전담 직원 변경 후 15일 이내에 외국인을 초청할 경우 피초청 외국인에 대한 사증발급신청서 신청 전까지 변경 등록
- 고액의 부당한 수수료 요구 금지,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정보 누설 금지
- 출입국관리법 등 관련 법령 준수

2 회원자격 정지 및 취소 · 회원 재가입 제한

- 일반적 행정제재

제재종류		1월 정지	3월 정지	회원자격 취소
내용				
출입국관리법 위반 범칙금 부과 시		101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	301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	501만원 이상 통고처분을 받은 경우 또는 고발된 경우
고액의 부당한 수수료 요구		최초 적발	-	2회 적발
		통상의 거래 수수료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제재		
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정보 누설		최초 적발	-	2회 적발
		고의 또는 과실로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누설한 경우 제재		
출입국관리 사무소장의 정당한 업무지시 위반	중대한 경우	중대한 업무지시 위반		사증발급을 허가할 수 없을 정도로 위반사실이 중대한 경우
	경미한 경우	반복적으로 위반		정지처분 후 3월 이내 반복 위반
허위서류 제출		과실	-	고의적인 경우
		출입국관리법 제7조의2 또는 제26조를 위반한 경우(범칙금 부과와 상관없음)		
유치기관 등록 취소		-		보건복지부장관이 유치기관 등록을 취소한 경우
기타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		정도에 따라 사무소장이 판단		사회적 파장이 커서 유치기관으로서 지위를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

○ 회원재가입 제한

- 회원자격이 취소된 유치기관은 취소일로부터 2년간 재가입 제한

※ 단, 보건복지부장관이 등록을 취소하였으나 유치기관등록증을 재발급 받은 경우에는 등록증 발급일부터 회원자격 다시 부여

○ 회원자격의 취소의 면제

- 취소사유가 있는 유치기관 중, 기관의 소명 내용, 소재불명 발생 건수 및 「출입국관리법」 위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취소가 부적당하다고 사무소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본부 승인을 받아 회원자격 취소 면제

○ (제재시기) 사유발생일

3 불법체류자 발생에 따른 초청자의 행정제재

○ (근거)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2항 7호

○ 불법체류율 산식 (단위 : %, 소수점 이하 반올림)

$$\frac{\text{신청일(또는 제재일) 기준 최근 6개월간 불법체류 발생 인원}}{\text{신청일(또는 제재일) 기준 최근 6개월간 입국한 인원}} \times 100$$

【불법체류자 발생에 따른 행정제재 기준】

입국인원 \ 제재종류	서면경고	1월 정지	3월 정지	회원자격 취소
1명 ~ 10명	총 1명 발생	총 2명 발생	총 3명 발생	총 4명 이상 발생
11명 ~ 20명	총 2명 발생	총 3명 발생	총 4명 발생	총 5명 이상 발생
21명 이상	불법체류율 5%~15%	불법체류율 16%~20%	불법체류율 21%~30%	불법체류율 31%이상

※ 총 발생인원은 신청일(신청이 없는 경우 제재일) 기준 최근 6개월간 발생한 인원을 말함

※ (최근 3개월 이내 행정제재가 있는 경우) 최근 행정제재 이후의 최근 6개월간 입국인원과 불법체류자 비율로 산정하되, 행정제재 이전의 입국 및 불법체류 인원은 미포함

- 단, 행정제재 이후 3개월 이내 1명 이상 불법체류가 발생한 경우에는 새로이 산정한 제재종류보다 1단계 상향(우수 유치기관은 적용 제외)

❖ 우수 유치기관에 대한 행정제재 효과

- 의료관광 유치기관이 “3개월 이상 정지” 처분 이상의 행정제재를 받은 경우에는 우수유치기관 자격 취소
- 우수 유치기관 자격이 취소되는 경우 일반 유치기관으로 지위 변경